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57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안 제24조제4항)
- 나. 경조사 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 다. 기타 휴가 관련 용어 등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4. 10. 10. ~ 10. 30.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5)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4. 11.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연가계획 및 허가)”를 “(연가계획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허가”를 각각 “승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을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 중 “연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본문 중 “4시간이상”을 “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를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으로, “시간외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의 휴가일수는 2024년 7월 2일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p> <p>② 삭 제</p> <p>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u>허가</u>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u>허가</u>하여야 한다.</p> <p>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 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u>얻을</u> 수 있다.</p> <p>②·③ 삭 제</p> <p>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 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u>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u>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 3. (생 략)</p>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p>	<p>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③ ----- ----- <u>승인</u>----- -----.</p> <p>④ ----- ----- ----- <u>승인</u>----- -----.</p> <p>제24조(특별휴가) ① ----- ----- ----- ----- <u>사용할</u> -----.</p> <p>④ ----- ----- -----<u>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⑥ ~ ⑩ 삭제

⑪ (생략)

⑫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직제·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 4. (생략)

⑭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사용할

⑪ (현행과 같음)

⑫

사용할

⑬

승인

1. ~ 4. (현행과 같음)

⑭

4시간 이상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⑮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시간외근무-----.

⑮ -----사용할-----.

⑯ -----사용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조아라
연 락 처	02-3153-8215